



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 9. 30.] [충청남도조례 제4168호, 2016. 9. 30., 제정]

충청남도 (농정국 친환경농산과)

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충남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토종농작물”이란 충청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”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 등”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

□ 제4조(종합계획 수립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 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토종농작물의 조사, 관리, 재배 등의 현황
2.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
3.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·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·지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제5조(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·운영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·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- 1.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 - 2.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에 관한 사항
 - 3.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협의회의 인원수, 위촉절차,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제6조(모범사업자 선정·지원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해당 생산업·가공업·유통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
 - 2.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
 - 3.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
 - 4.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

□ 제7조(사업지원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(이하 “시책사업”이라 한다)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그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시행 전에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구체적 절차·방법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□ 제8조(사업정산 및 평가)

-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결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사업 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.

□ 제9조(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·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제9조(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·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제10조(시행규칙)

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조례 제4168호, 2016. 9. 3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